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박주민 · 김 윤 · 권향엽
김준환 · 최민희 · 박지혜
김한규 · 정일영 · 박은정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

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호와 제4호”를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3의2. “수사범죄”란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3조의2,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7조, 제141조, 제151조, 제152조,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및 제22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밖에 수사와 관련한 죄로서 수사처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

4의2. “수사범죄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상대로 한 자의 「형

법」 제133조의 죄

나. 수사범죄와 관련되어 수사범죄의 피의자인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이외의 자가 범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다. 수사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수사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수사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죄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사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제24조의2에 따른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보가 수사범죄등에 관한 것이고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통보를 한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30일 이내에 제24조

의2에 따른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처에의 이첩

2.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통보를 한 수사기관이나 수사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통보를 한 수사기관이나 수사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①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사범죄 수사개시 여부 및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사범죄 등의 이첩 요청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수사범죄”란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u> <u>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3조의2,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7조, 제141조, 제151조, 제152조,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및 제22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나. 그 밖에 수사와 관련한 죄로서 수사처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u> 4. (현행과 같음) <u>4의2. “수사범죄관련범죄”란 다</u>
4. (생략) <u><신설></u>	

<신 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수사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제24조의2에 따른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 다만, 통보가
수사범죄등에 관한 것이고 수사
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통보를 한 수사기
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처장은 통보를 한 다
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신 설>

<신 설>

<신 설>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을 30일 이내에 제24조의2에 따
른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처에의 이첩

2.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통보를 한
수사기관이나 수사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통보를 한
수사기관이나 수사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제24조의2(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
회) ①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
른 수사범죄 수사개시 여부 및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사범죄등의 이첩 요청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
에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수사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